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19가합5608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202388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19가합560847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이헌제

4.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정

담당변호사 조지영

변론 종결 2021. 3. 5.

판결 선고 2021. 4. 30.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7,625,067원 및 그 중 643,485,257원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2019. 9. 9.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73,555,8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173,555,8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128,750,6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128,750,6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D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268,047,0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D는 원고에게 268,047,0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의 신용보증약정

- 1) 원고는 2015. 5.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과의 사이에 피고 A이 E은행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1억 8,000만 원(이후 1억 7,000만 원으로 변경됨)의 한도 내에서 2016. 5. 26.(이후 2019. 5. 24.로 변경됨)까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 2) 원고는 2016. 7. 25. 피고 A과의 사이에 피고 A이 E은행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4억 9,500만 원(이후 4억 6,750만 원으로 변경됨)의 한도 내에서 2018. 5. 24.(이후 2019. 5. 24.로 변경됨)까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 3) 이 사건 제1, 2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약정이율(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 연 10%, 2019. 4. 1. 이후 연 8%)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피고 B의 연대보증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 1) 피고 A은 2019. 5. 24. E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9. 8. 23. E은행에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71,556,175원(= 원금 170,000,000원 + 이자 1,556,175원)을, 같은 날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471,929,082원(= 원금 467,500,000원 + 이자 4,429,08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 2) 위 각 대위변제로 인한 위약금은 2,200,670원, 법적 절차 비용은 1,939,140원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B과 피고 C의 증여계약 체결

1) 피고 B은 2018. 12.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C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2018. 12. 1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B과 피고 D의 이혼 및 증여계약 체결 등

1) 피고 B과 피고 D는 2002. 5. 21.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지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9. 3. 22.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위 피고들은 자녀들인 F,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D를 지정하였고, 피고 B이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2) 피고 B은 2018. 12. 17.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제3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의 근저당권 현황 등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이전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10. 7. 접수 제83492호로 경로된 채무자 소외 H(2018. 2. 23. 피고 B으로 변경),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2018. 12. 2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이전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11. 19. 접수 제81840호로 경로된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제3부동산과 공동담보)이 있었는데, 2019. 5. 2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위 근저당권 이외에도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이전부터 같은 등기소 2015. 8. 17. 접수 제67715호로 경로된 채무자 피고 A(2019. 1. 17. 채무자가 I로 변경됨), 근저당권자 J(이하 'J'라 한다),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제3부동산과

공동담보), 같은 등기소 2016. 1. 14. 접수 제2681호로 경료된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제3부동산과 공동담보), 같은 등기소 2016. 4. 22. 접수 제28279호로 경료된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제3부동산과 공동담보), 같은 등기소 2017. 3. 31. 접수 제24205호로 경료된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제3부동산과 공동담보)이 있었는데, 위 J 명의의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E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은 2019. 1. 21.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3) 이 사건 제3부동산에는 이 사건 제3증여계약 이전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11. 19. 접수 제81840호로 경료된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제2부동산과 공동담보)이 있었는데, 2019. 5. 2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제3부동산에는 위 근저당권 이외에도 이 사건 제3증여계약 이전부터 같은 등기소 2015. 8. 17. 접수 제67715호로 경료된 채무자 피고 A(2019. 1. 17. 채무자가 I로 변경됨),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제2부동산과 공동담보), 같은 등기소 2016. 1. 14. 접수 제2681호로 경료된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제2부동산과 공동담보), 같은 등기소 2016. 4. 22. 접수 제28279호로 경료된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제2부동산과 공동담보), 같은 등기소 2017. 3. 31. 접수 제24205호로 경료된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제2부동산과 공동담보)이 있었는데, 위 J 명의의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E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은 2019. 1. 21.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 10호증, 을다 제5호증, 을라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7,625,067원(= 이 사건 제1, 2차 신용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합계

643,485,257원 + 위약금 2,200,670원 + 법적 절차 비용 1,939,1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643,485,25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9. 9. 9.까지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1, 2차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후 약 5개월만인 2019. 5. 24.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E은행에 대한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피고 A의 신용등급이 A-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신용상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후 약 6개월이 경과한 2019. 6. 30.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던 점,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 A의 4대 보험료 미납내역이 15,780원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위 각 증여계약 체결 무렵에는 피고 A의 재무상황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9. 5. 2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지만,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내지 17,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구상금채권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① 피고 A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전 E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그 대출만기 및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 기한을 2019. 5. 24.까지 수차례 연장하여 왔는데1), 아래 ②,

③항에서 살펴볼 피고 A의 운영 상황 및 자본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 A은 2016년경 무렵부터 회사 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대출 만기일까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대출 기한 만료 시점에 계속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보증사고를 모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A의 매출액은 2016년 155억 3,500만 원에서 2017년 132억 400만 원으로 약 15% 급감하였고, 영업이익은 2016년 8,400만 원에서 2017년 -3,600만 원 적자로 전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A의 위와 같은 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감소상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무렵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③ 피고 A은 영업손실 등으로 악화된 회사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직후인 2019. 1. 4. 자본금을 2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 ④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의 재정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피고 A은 결국 2019. 5. 24. E은행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에 실패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고, 약 3개월 뒤인 2019. 8. 23. 원고가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사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 ⑤ 앞서 본 피고 A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 및 재무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 6. 30.까지 피고 A의 신용등급이 A-로 유지되고 있었다거나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 A의 4대 보험료 미납내역이 15,780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은 그 무렵 피고 A의 재정상태가 별다른 문제가 없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
-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B의 무자력 여부

-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상대방이 피고 C과 피고 D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 피고 D는 피고 B의 당시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고 B과 모두 가족관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체결일은 2018. 12. 14.이고,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 체결일은 동일하게 각 2018. 12. 17.이며, 이 사건 제1증여계약과 이 사건 제2, 3증여계약이 매우 근접한 시일 내에 체결된 점, ③ 피고 D는 피고 B과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고, 피고

C은 피고 B와 피고 D의 이혼 및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거주권과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순차로 증여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위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피고 A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D와의 이혼이라는 동일한 기회 또는 동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 D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 B의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으며,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이른바 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적극재산2) ① 이 사건 제1부동산 가액 233,000,000원

② 이 사건 제2, 3부동산 가액 합계 828,032,1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018. 12. 17. 기준 251,942,100원이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018. 12. 17. 기준 876,090,000원이다. 한편 이 사건 제2부동산과 제3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물상보증으로 피고 A을 채무자, J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20,000,000원)가 마쳐져 있고, 2018. 12. 17. 기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10,284,959원이다. 또한 위 J 명의의 근저당권에 뒤이어 이 사건 제2부동산과 제3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물상보증으로 피고 A을 채무자, E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420,000,000원)가 마쳐져 있고, 2018. 12. 17. 기준 위 3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80,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가액 합계 1,128,032,100원에서 위 J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범위 내인 채권최고액 120,000,000원과 위 E은행 명의의 3건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의 피담보채무액인 18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공제한 828,032,100원(= 1,128,032,100원 - 300,000,000원)만이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적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③ E은행 예금 15,343,842원3) ④ K은행 예금 57,265,715원4) ⑤ L에 대한 해지환급금 20,941,479원

⑥ M에 대한 해지환급금 4,474,250원5) ⑦ N에 대한 해지환급금 29,040,936원

⑧ O에 대한 해지환급금 21,244,800원

⑨ P에 대한 주식예탁금 172,188,800원

⑩ Q에 대한 해약환급금 9,667,500원

⑪ 적극재산 합계 1,391,199,422원

⑫ 인정하지 않는 부분(R 지상 가설건축물, 화성시 S 지상 가설건축물, 피고 A 주식 4만 주, 피고 B의 퇴직금, 배당금 등)

○ 피고 D는 위 각 가설건축물, 피고 A 주식이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피고 D는 피고 B이 피고 A으로부터 2018. 12. 21.부터 2019. 4. 29.까지 지급받은 4억 2,000만 원이 피고 B의 퇴직금 또는 배당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A이 피고 B에게 2018. 12. 24. 1억 원, 2019. 3. 28. 1억 9,000만 원, 2019. 4. 29. 1억 3,000만 원 등 합계 4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4억 2,000만 원이 피고 B의 퇴직금 또는 피고 A 주식과 관련한 배당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3, 14, 20호증의 각 기재,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 M, N, O, P, K은행, E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T단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치

(2) 소극재산

①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89,444,194원6) ② K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90,989,640원7) ③ U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④ V에 대한 대출금채무 36,394,000원

⑤ 원고에 대한 구상금 원금 상당의 연대보증채무 643,485,257원

2018. 12. 17. 당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8. 12. 17. 무렵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위 구상금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상당의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원금 상당의 연대보증채무 643,485,257원은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⑥ 소극재산 합계 1,210,313,091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2, 13,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1,391,199,422원 상당의 적극재산과 1,210,313,091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합계 1,061,032,100원(= 이 사건 제1부동산 가액

233,000,000원 + 이 사건 제2, 3부동산 가액 합계 828,032,1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 D에게 모두 증여함으로써 피고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인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 D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실질적인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증여의 시기, 처분행위의 성질, 피고 B, C, D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과 피고 D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피고 B과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제3증여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한편,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3증여계약이 상당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가)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 대상 재산 내역8) ① 피고 B의 순재산 424,598,506원

○ 피고 B이 이 사건 협의이혼 신청 직전에 가액 233,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1부동산, 가액 251,942,1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2부동산, 가액 876,09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3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2, 3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물상보증으로 합계

300,000,000원(피담보채무액의 범위 내인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J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액이 180,000,000원인 E은행 명의의 3건의 근저당권)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며(주채무자인 피고 A이 무자력이므로 위 물상보증금액을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적극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E은행 예금 3,860,852원9) , K은행 예금

1,754,785원10) L에 대한 해지환급금 20,941,479원, M에 대한 해지환급금 4,474,250원, N에

대한 해지환급금 29,040,936원, O에 대한 해지환급금 21,244,800원, P에 대한 주식예탁금

172,188,800원, Q에 대한 해약환급금 9,667,500원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합계

1,324,205,502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반면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는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89,444,194원, K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90,989,640원, U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V에 대한 대출금채무 36,394,000원 등 합계 566,827,834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올라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순재산은 757,377,668원(= 1,324,205,502원 -

566,827,834원)이 된다.

○ 원고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은 피고 B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올라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이 혼인기간 중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취득하였던 점, 피고 B과 피고 D의 혼인기간이 약 17년 정도로 상당히 길고, 피고 D는

혼인기간 동안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면서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피고 B의 대리점

영업을 돕는 등 부부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부동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연대보증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부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참조), 위 연대보증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가 2019. 5. 24. 발생하여 협의이혼신고일인 2019. 3. 22. 당시 위 연대보증채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 D의 순재산 3억 3,000만 원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가 이 사건 제3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12. 17. 무렵 가액 3억 3,000만 원 상당의 광주시 W 아파트 X호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의 순재산은 3억 3,000만 원이 된다.

피고 D는 위 W 아파트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A(2019. 1. 21. I로 변경됨), 근저당권자 Y, 채권최고액 1억 3,2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채무자 피고 A(2019. 1. 21. I로 변경됨),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고 D의 소극재산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2020. 12. 9.자)에 의하면 2018. 12. 17. 당시 위 E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협의이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론될 뿐 아니라, 부부 일방이 타인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일방이 위 채무에 대한 종국적인 변제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주채무자 등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 부부 일방이 당해 채무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피담보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I가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I의 Y에 대한 채무는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채무 상당액을 피고 D의 재산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분할대상재산 합계 1,086,600,773원

결국 피고 B과 피고 D의 분할대상재산은 피고 B의 순재산 757,377,668원과 피고 D의 순재산 3억 3,000만 원의 합계액인 1,087,377,668원(= 757,377,668원 + 3억 3,000만 원)이 된다.

(나)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가 약 17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피고 B의 사업을 돕는 등 부부 공동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한 점, 위 피고들이 이혼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 B과 피고 D의 혼인생활 과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D의 재산분할 비율은 50%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상당한 재산분할 금액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3. 22.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피고 B과 피고 D의 순재산가액은 1,087,377,668원이므로, 피고 D에게 귀속될 상당한 재산분할 금액은 213,688,834원[= 543,688,834원(= 피고 B과 피고 D의 순재산 합계 1,087,377,668원 × 1/2) - 피고 D의 순재산 3억 3,000만 원]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피고 D는 이 사건 제3증여계약에 따라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3부동산 전부를 양도받음으로써, 위 상당한 재산분할금액보다 662,401,166원(= 이 사건 제3부동산 가액 876,090,000원 - 상당한 재산분할금액 213,688,834원) 상당을 초과하는 재산을 더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3증여계약 중 662,401,166원 부분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3증여계약 중 662,401,166원 부분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인정되는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부동산의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다)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가액배상은 ①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 - 피담보채무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2018. 12. 26.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Z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증여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89,444,194원인 사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가액은 26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인 263,000,0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89,444,194원을 공제한 173,555,806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대위변제금 원금만 하여도 643,485,375원에 달하는 피보전채권액과 위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173,555,806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위 173,555,806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173,555,8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들이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이후 모두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갑 제11, 13, 14,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Z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은 244,943,700원이고, 공동담보인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은 1,019,90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근저당권자인 E은행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이 부담하여야 할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92,954,476원[=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체결 당시 E은행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 합계 4억 8,000만 원 $\times$ 244,943,700원(이 사건 제2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1,264,844,7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 가액 244,943,700원 + 공동담보인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 1,019,901,000원), 원 미만 반올림]인 사실, 공동근저당권자인 J에 대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이 부담하여야 할 피담보채무액은 23,238,619원[= 이 사건 제2증여계약 체결 당시 J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210,284,959원의 범위 내인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times$ 244,943,700원(이 사건 제2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1,264,844,7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 가액 244,943,700원 + 공동담보인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 1,019,901,000원), 원 미만

반올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인 244,943,700원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28,750,605원(= 244,943,700원 - 92,954,476원 - 23,238,619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대위변제금 원금만 하여도 643,485,375원인 피보전채권액과 위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128,750,605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위 128,750,605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128,750,6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제3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이 사건 제3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근저당권들은 이 사건 제3증여계약 이후 모두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은 1,019,901,000원이고, 공동담보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은 244,943,700원인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공동근저당권자인 E은행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이 부담하여야 할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387,045,524원 [= 이 사건 제3증여계약 체결 당시 E은행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 합계 4억 8,000만 원 × 1,019,901,000원(이 사건 제3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1,264,844,700원(= 공동담보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 244,943,700원 +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 1,019,901,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 공동근저당권자인 J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이 부담하여야 할 피담보채무액은 96,761,381원[= 이 사건 제3증여계약 체결 당시 J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210,284,959원의 범위 내인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 1,019,901,000원(이 사건 제3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1,264,844,700원(= 공동담보인 이 사건 제2부동산 가액 244,943,700원 +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 1,019,90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가액인 1,019,901,000원에서 위 각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536,094,095원(= 1,019,901,000원 - 387,045,524원 - 96,761,381원)이 된다. 또한 이 사건 제3증여계약 중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부분은 662,401,166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은 대위변제금 원금만 하여도 643,485,375원인 피보전채권액과 위 공동담보가액 536,094,095원, 이 사건 제3증여계약 중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위 662,401,166원 중 적은 금액인 536,094,095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원고가 268,047,047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제3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68,047,047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제3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268,047,0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마은혁

판사장민경

판사오주훈

별지

1) 피고 A이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출만기까지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여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의 보증 기한은 2016. 5. 26.에서 2017. 5. 26.로, 2017. 5. 26.에서 2018. 5. 25.로,

2018. 5. 25.에서 2019. 5. 24.로 3차례 연장되었고,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의 보증 기한은 2018. 5. 24.에서 2019. 5. 24.로 연장되었다.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그 일련의 행위가 최종적으로 마쳐진 2018. 12. 17.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제1증여계약일인 2018. 12. 14.을 기준으로 산정된 재산 가액은 2018. 12. 17.에도 같은 가액일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소극재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2018. 12. 17.자 예금 잔액(을다 제1호증 1면 참조).

4) K은행에 대한 예금계좌 4건의 2018. 12. 17.자 예금 잔액의 합계액이 57,265,715원(= 1,820,674원 + 55,441,071원 + 8원 + 3,962원)이다.

5) 2018. 12. 17.자로 해지되어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이 4,474,250원(= 2,421,580원 + 781,750원 + 1,270,920원)이다.

6) [=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경료된 E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89,444,194원 +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경료된 E은행의 명의의 근저당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4. 11. 19. 접수 제81840호로 경료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00,000,000원]

7) 이 법원의 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2020. 10. 6.자)

8) 협의이혼신고일인 2019. 3. 22.의 재산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 B, D가 이 사건 제3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12. 17. 무렵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협의이혼신고일인 2019. 3. 22.에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산정한다.

9) 2019. 3. 22.자 금액(을다 제1호증 참조)

10) K은행에 대한 예금계좌 4건의 2019. 3. 22.자 예금 잔액의 합계액이 1,754,785원(= 763,181원 + 987,634원 + 8원 + 3,962원)이다.

11) E은행 명의의 4건의 근저당권 중 위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0,000,000원과 나머지 3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80,000,000원의 합계액이다.